

●울산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2호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2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1	울산항 (신항)	울 산 광역시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35-28-40N, 129-25-52E 나. 35-24-11N, 129-25-52E 다. 35-24-11N, 129-21-45E
2	미포 전하항	울 산 광역시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35-31-34N, 129-27-15E 나. 35-30-41N, 129-26-43E 다. 35-30-27N, 129-26-54E 라. 35-30-07N, 129-26-34E
3	대변항	부 산 광역시 기장군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35-13-13N, 129-14-10E 나. 35-12-47N, 129-14-03E 다. 35-12-48N, 129-13-20E

2. 문의처: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52-230-2449)
3.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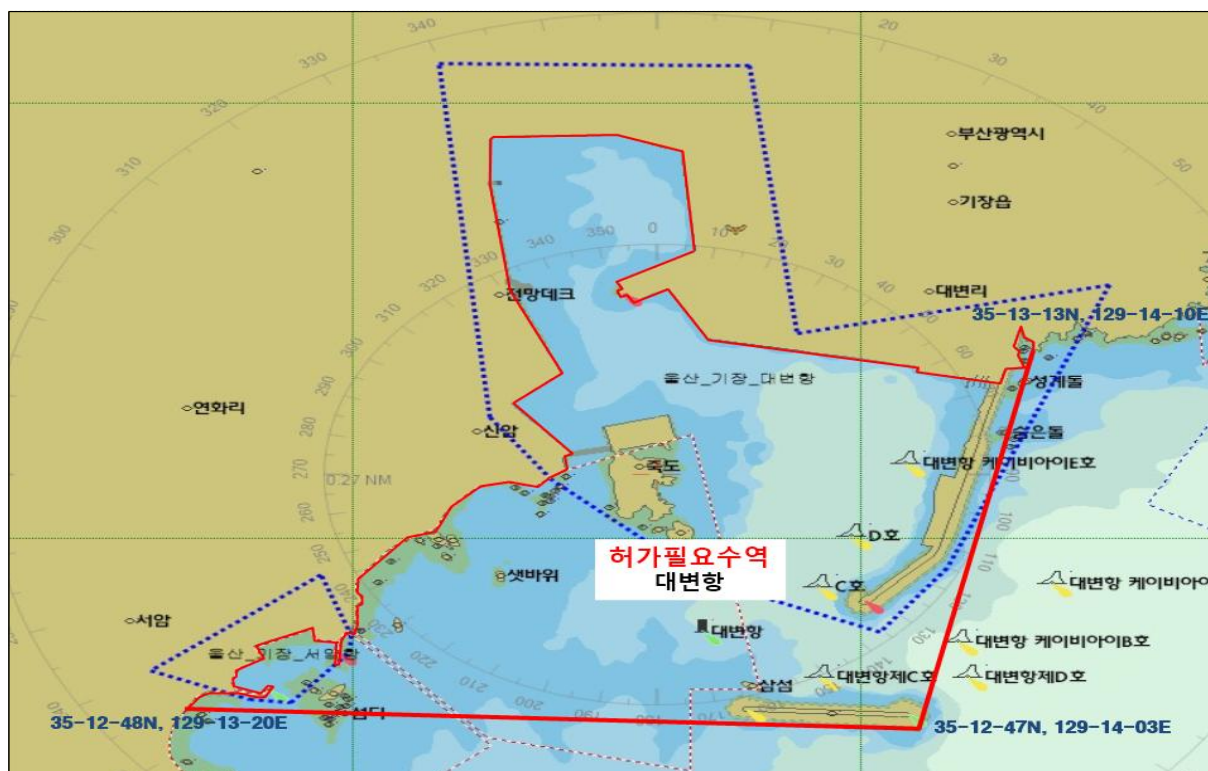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4호는 폐지한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울산항(신항), 미포·전하항



대변항